

매매약관

“매수인”은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동 법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매도인”은[]을 의미하며, 본 주문서 상 매수인에게 상품 및/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체의 회사, 기업,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1) 매도인은 본 주문서의 전면에 내역이 기재된 상품 및/또는 용역을 본 약관에 따라 공급하기로 제언하며, 매도인은 제안을 하 기 전에 본 약관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약관은 당사자들 간의 당사자들 간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매수인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수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어떤 문서 내의 어떤 변경 사항, 변이 사항 또는 개정 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주문서의 전면에 기재된 조건과 본 약관 간에 상충 또는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주문서의 전면 상의 조건이당사자들 간에 우선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납품 시간, 일자 및 장소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직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상품 또는 용역의 견적가와 물량을 감안하여 여타 매수인에게 제공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품목에 대 한 매도인의 현재 가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본 약관에 의해 진술한다.

5)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하고 수락하지 않는 한, 어떤 성격 또는 종류의 어떤 추가 과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6) 매도인은 본 계약의 효력 또는 부담을 어떤 개인, 법인, 기업 또는 회사에게도 양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 상 매도 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어떤 업무도 매수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도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주문서 또는 매도인 및 매수인 간의 여타 주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금융회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채권에 대해 상계하거나 강제할 권리를 항상 가진다.

7) 매수인은 본 주문서의 대상이 되는 작업 도면, 작업 명세, 작업 지시서, 선정 및 포장 방법, 일정, 납품 장소, 자체 및/또는 작업 을 변경할 권리를 본 약관에 따라 보유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당해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로 본 약관에 의해 약정한다. 당해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비용부담 또는 이행 기간의 가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변경 사항은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당해 변경 사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목별 청구 내역서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와 관련하여 매수인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 일체를 포기한 것으로 확 정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주문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명세에 어떤 변경도 할 권리가 없다.

8) 본 주문서에 따라 견본 제공이 요청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견본이 매수인의 표준적 시험을 거치고 매수인이 동견본을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어떤 물량도 선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매도인은 일체의 제조, 장비, 자체 및 공급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체계를 매수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동 대상을 일체는 제조 시점을 전후로 합당한 시기와 장소에서 매수인이 검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출발지에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공급품 일체는 매수인이 도착지에서 인수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거쳐야한다. 불합격되어 매도인에게 반품되는 일체의 공급품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특정하지 않는 한당해 하자공급품은 대체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든 본 주문서에 따라 공급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

(a) 하자 공급품 일체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도인에게 반품하여 전액 환불을 받거나,

(b) 하자 공급품 일체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이 당해 상품을 대체하거나 하자를 치유하도록 요구하거나,

(c) 본 계약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 지급된 대금의 어떤 부분이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은 그와 관련한 운송, 운반, 포장 및 자재로 인해 매수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매 도인이 인수 거부된 공급품을 매수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지체 없이 대체 및 시정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공급품을 구 매하거나 대체 또는 시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0)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의해 납품되는 상품에 대해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a) 관련 법령 및 본 주문서의 의미 내에서 만족스러운 품질이며, 주문이 발주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게알려주거나 매도인이 표명하는 목적에 적합할 것이다.

(b) 통상적 사용 및 보수 조건 하에서 제작의 양부 및 자재에 있어 결함이 없을 것이다.

(c) 매수인이 승인하는 해당 견본에 일치할 것이다.

(d) 상품 매매에 관련한 법정 요건 및 규정 일체를 준수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이 설정한 일체의 유지권 및 권리제한 사항 없이 상품에 대한 하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임을 보증한다.

11)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밀 정보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영업 비 밀 및 여타 기밀 자료(“대상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대상정보 가 어떤 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의 무단 발표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이러한 기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자신 또는 여타 기업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체의 대상정보를 반환, 파괴 또는폐기하기로 약 정한다.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대상정보의 파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 매도인은 본 주문의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작하거나 고안하는 설계, 모형, 도면, 사진, 의장, 공정 및 여타 발명 일체에대해 세계 전역에서 적용되는 완전한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며 본 약관에 의해 양도한다. 매도 인은 본 주문의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작하거나 고안하는 설계, 모형, 도면, 사진, 의장, 공정 및 여타 발명 일체를 매수인에 게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주문서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설계, 모형, 도면, 사진, 발명, 공정 및 여타 발명에 대해서계 전역에서 적용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독점적 보호 조치를 매수인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요구되거나 유용하거나 편리한 증서, 보증, 행위 및 사항을 무상으로 작성 및 실행하고 이에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있는 경우 동 개인 또는 법인이 이를 실행, 서명, 인정하도록 하며 서명, 작성, 인정되도록 하기로 약정한다.

13)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하는 장비의 기능, 공구, 게이지, 패턴, 설계, 도면, 공학 데이터 또는 여타 기술적 또는 독점적 정보 일체의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를 본 주문서 또는 매도인의 여타 주문서에 의한상품의 생산에만 사용하고, 매수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주문의 완료 또는 해지 후, 매도인은 매수인 에게 속하며 매도인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장비, 공구, 게이지, 패턴, 설계, 도면, 공학 데이터, 기법 또는 정보, 서류, 명세 서, 문서 및 재산 일체를 매수인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14) 상품의 견적가 당해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별한 다이(die), 금형, 공구 및 패턴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재산이 되어야 하며 매수인의 재산이 된다. 매도인이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당해 재산은 매도인의 경비 부담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매도 인이 위험을 부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매도인에게 제공되거나 매수인에게 속하는 어떤 다이, 금형, 공구, 패턴 또는 도면도, 매수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문서에 특정되지 않은 어떤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설계에 사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되거나 건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재산은 매수인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합당한 손모를 감안하여 당초에 매도인이 수령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시 재인 도하여야 한다.

15) 매도인은 매도인이 본 약관의 대상인 상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사실을 매수인의 명시 적 서면 동의를 사전에 득하지 아니하고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주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어떤 내역도 어떤 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약관의 어떤 조건이든 어떤 측면에서도 무효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여타 규정의 유효성, 합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제공되는 구체 수단은 누적 적이며,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규정되는 일체의 여타 구체 수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본 약관의 어떤 규정이든 그 위반에 대한 어떤 권리 포기도 당해 규정의 여타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17) 전쟁, 침략, 외국의 적의 행위, 적대 행위(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내란, 반란, 혁명, 폭동, 군사 행위 또는 권력 찬탈이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주문서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이행이 당해 사태로 인해 또는 정부 부처, 위원회 또는 적법 하게 구성된 당국에 의한 법령,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징벌에 의해 또는 매도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여타 원인(유사한 성 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에 의해 방해, 좌절 또는 지체되는 경우, 당해 범위 내에서 당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18) 상품 또는 용역의 납품이 지연될 것이거나 지연되었음이 합당하게 명백해진 경우, 매도인은 지연의 원인에 관한 통지를매수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의견으로 보아 천재지변, 공적의 행위, 정부의 조치, 화재, 홍수, 전염병, 격리 조 지, 파업, 화물 봉쇄, 예외적으로 심각한 기상 또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의해 좌절 또는 용역의 납품 완료가 지연 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연된 경우, 매수인은 상품의 납품 이행 기한 연장에 관한 서면 요청을 수령한 후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기한 연장을 매도인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단, 매도인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항상 경주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납품을 완료하기 위해 합당하게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매수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 매도인은 본 약관에 규정된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본 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 일체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 하고, 매수인이 인수를 거부하였거나 인수를 철회한 상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위험 일체를 당해 거부 또는 철 회 시점으로부터 부담하여야 한다.

20) 매도인은 본 약관에 의해 공급되도록 계약된 상품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처분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침 해 주장으로 인해 매수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배상금, 벌금, 비용 및 경비에 대해 매수인 및 매수인의 고객 및 매수 인의 제품 사용자에게 면책 및 배상을 제공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다.

21) 매도인은 이에 의거한 해당 법령 및 규정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매도인은 본 주문서의 어떤 조건이든 매도인이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 청구, 배상금, 요구 또는 법적 책임 일체 에 대해 매수인에게 면책, 배상 및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의 면책 및 배상을 위해, 위의 면책 및 배상을 제한하지 않고, 매 도인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a) 매수인은 정당하게 인수를 거부한 상품의 검사, 수령, 운송, 관리 및 보관 과정에서 합당하게 발생하는 경비 일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과금, 경비 또는 수수료 및 매도인에 의한 지연 또는 계약 위반에 부대하는 여타 합당 한 경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부대적 배상금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b)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 주문을 수락 및 이행하는 시점에 인지하고 있는 매수인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요건 및 필요 사항과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기인하여 보험 가입 등으로 합당하게 예방할 수 없는 간접 손해 배상금, 그리고 매도인의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해 매수인이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3) 본 약관에 의한 여타 권리 외에도, 매도인이 본 약관의 어떤 규정이든 위반하거나,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부과되거나, 매도인이 채권자와 함께 채무조정 또는 회의를 하거나 이를 제외하거나 파산 행위를 하거나, 매도인에게 대해 파산 신청 또는 법정관리 명령이 내려지거나 제출되거나, 주식회사인 매도인의 사업 청산 또는 해산 결정 또는 신청이 내려지거나 제출되거나(기업재건 또는 합병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의 재산 또는 자산 또 는 그 일부에 대한 법정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매수인이 제기하거나 행사하는 여타 어떤 청구 또는 권리도 제한 받지 않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서면 취소 통지를 발송하여 본 주문 또는 본 주문의 일부를 즉시 취소할 권리를가진다.

24) 본 약관에 누락된 사항 또는 당해 누락 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의견 차이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의견 차이 또는 의문은 한국의 상법 및 여타 해당 법령과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25) 본 주문으로 인하여 또는 본 주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조치 또는 절차는 매수인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로 한 다.

26) 지급 조건 : 현지 법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주문서상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지급 조건은 매도인의 유효한 청구서가 수령되는 시점 또는, 제품이나 용역이 수령되는 시점 후 최대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20일로 한다.

27) 감사권 : 매수인은 합당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교부한 후에, 본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지급한 금융과 관련하여, 매도인 의 장부, 원장, 증빙 기록/서류 및 관련 절차와 통제 제도를 감사할 수 있다.

28) 매도인은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BD Supplier Guide (BD 협력 업체 지침서)에 기재된 기대사항(협력업체에 대한 BD의 기대사항) 준수

b) 현지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법령 준수

c)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준수

d) 매도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해 매도인이 당사자인 여타 어떤 약정 또는 계약도 위반되지 않는다.